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사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4년 9월 3일(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4년 9월 3일
- 다. 상정일자 : 2004년 9월 16일(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교육국장 김전원)

가. 제안이유

-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여, 관리·운영 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에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 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부속설비 징수액 다음에 수영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수영장	일일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초등학생이하 : 13세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이상 19세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외부지도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다이빙장	1일당	10,000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지용욱)

-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 제85회 전국체전준비를 위해 실내수영장으로 정비한 청주농고
수영장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하고,
 - 주민들에게 시설을 유료 개방하여 도민 체육활동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영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 수영장 사용료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 별표 2의 수영장 사용료 비고란에
 - ① 징수액이 1인 기준 금액임을 명시하고,
 - ② “13세 이상 19세 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하여,
사용료 및 적용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법 제정 취지로 볼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할인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징수액이 1인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함

- 사용료가 1인 기준임을 명시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하여 사용료와 적용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9월 16일

제안자 : 이기동 의원의외

□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징수액이 1인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함
- 사용료가 1인 기준임을 명시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함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과 물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 할인하여 징수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개호인 1인
5. 65세 이상 노인

○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공 연 장		50,000원	○ 전시설 사용기간 4월 ~ 10월(09:00 ~ 20:00) 11월 ~ 3월(09:00 ~ 18:00) ○ 기준시간 초과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강 당		75,000원		
	전시설 (내부)		20,000원		
	전시설 (외부)		10,000원		
	부속설비	피아노	10,000원		
		프로젝터	30,000원		
		난 방	실사용량		
		냉 방	전기 수용기본요금 × 1/30+실사용량		
		조명(전기)	전기 수용기본요금 × 1/30+실사용량		
	수영장	일일 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중·고등 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 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 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 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다이 빙장	1일당	10,000	

제 천 학생회관	롤러스케이 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 미만 또는 고등 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3-B4	360원	〃	
		A4-B5	180원	〃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중 “사용”을 “사용및징수등”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 할인하여 징수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개호인 1인
5. 65세 이상 노인

○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공 연 장		50,000원	○ 전시설 사용기간 4월 ~ 10월(09:00 ~ 20:00) 11월 ~ 3월(09:00 ~ 18:00)	
	강 당		75,000원		
	전시설 (내부)		20,000원		
	전시설 (외부)		10,000원		
	부속설비	피아노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프로젝터		30,000원	
		난 방		실사용량	
		냉 방		전기수용기본요금 × 1/30+실사용량	
		조명(전기)		전기수용기본요금 × 1/30+실사용량	
	수영장	일일 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외부지도 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
			중·고등 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 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 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 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다이 빙장	1일당	10,000	

제 천 학생회관	플러스캐 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 미만 또는 고등 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흑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3-B4	360원	〃	
		A4-B5	180원	〃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 <u>사용</u> 에 관한조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 <u>사용및징수</u> 등에 관한조례
(신 설)	제27조 ① (생략) ②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 장과 롤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 할인하여 징수한다.</u> 1. <u>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u> 2. <u>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u> 3. <u>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자</u> 4. <u>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개호인 1인</u> 5. <u>65세 이상 노인</u>

현행				개정안				
【별표2】				【별표2】				
기관명	사구용분	징수액	비고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학생회관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충청북도학생회관	수업장	일일 입장	초등학생 이하	1,500원
		중·고등 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 원	초등학생 이하		30,000원			
			중·고등 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 입장	초등학생 이하		1,000원			
			중·고등 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다이빙장	1일당		10,000			

현행				개정안									
【별표2】				【별표2】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제천 학생 회관	롤러 스케 이트 장	학생	개인	500원	1인기준	롤러 스케 이트 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 미만 또는 고등 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단체	400원				”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			단체	800원				
	수영 장	학생	개인	500원	”	수영 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	”		일반	개인	1,000				
			단체	800	”			단체	800				
			(생략)					(현행과 같음)					
			공통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고궁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23조(고궁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고궁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5 · 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 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 · 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 · 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 · 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 설 의 종 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시 설 의 종 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무궁화호·통일호 및 비둘기호에 한한다)	100분의 50
2. 도시철도(철도법에 의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운임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호인 1인을 포함한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